

## 고객 통지문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는 등화장치 관련 제작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이번 결함 시정 통지로 인하여 고객님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통지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조속한 시일 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예약 입고 하시어, 시정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1. 제작결함의 내용

가.	차명 또는 부품명 제작연월일	Touareg 3 PA 3.0 TDI: 2024.02.08~2024.02.09
나.	형식	CR
다.	결함 장치 또는 부품 사진 또는 이미지	등화장치(제조사 로고램프) 
라.	결함 원인	차량 생산 시 적용 한 UN ECE R48 일부 규정(제조사 로고램프 점등 관련)이 국내에 적용되지 않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의 일부를 미충족합니다.

### 2.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내용

가.	시정조치 개시일	2024년 5월 13일(월) (관련 규정에 의하여 1년 6개월 이상)
나.	시정조치 방법	등화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다.	시정조치 장소 및 부서	전국 폭스바겐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 대표번호: 080-767-0089
라.	시정조치 비용	무상수리(리콜과 관련된 고객님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마.	제작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후미등 점등 시 제조사 로고 램프가 점등 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안전 기준 일부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 3. 제작결함 시정 관련 보상 내용

가.	보상관련 근거 및 설명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 그 결함을 자체 시정했던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나.	보상 기간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보상 기간 포함
다.	보상 신청 접수 연락처	전국 폭스바겐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 대표번호: 080-767-0089

### 4. 추가 안내 사항

가.	제작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계획입니다.
나.	리콜 관련 문의사항이나 이의 제기 시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80-767-0089)

고객님께

폭스바겐코리아는 자사의 자동차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고객님의 차량에 다음과 같은 제작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차량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실시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예약 입고

하시어 시정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시간은 차종에 따라, 서비스센터에서 안내 예정이며 관련

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폭스바겐코리아가 부담합니다.

본 건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사장**

※ 자동차대여사업자 대상 공지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리콜 차량을 시정조치 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거나 이미 대여한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리콜 통지 받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여객운수사업법개정(시행 '20.10.8)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